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ICT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 도입 등 〉
■ 정부제출(의안번호 제2202184호)

2024.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에 전문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3
2.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 신청에 대한 신속처리절차 마련	11
3.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규정 신설	16
4. 포상 규정 신설	19
5. 부칙	21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정부

나. 제출연월일 : 2024. 7. 24.

다. 회부연월일 : 2024. 7.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거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와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에 대한 신속 처리 절차 마련(안 제37조제4항 및 제38조의2제7항 신설)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의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 내용이 종전에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거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것과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거나 검토를 거쳐야 하는 기간을 15일 이내로 정하고, 그 협의·검토의 결과를 포함한 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의결은 전문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안 제40조의2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신규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의 허가 등을 처리하거나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업무 등을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함.

다.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40조의3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Ⅲ. 검토의견

1.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에 전문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가. 개정안 요지

-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¹⁾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위원회는 종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쳐 임시허가를 받거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²⁾로 지정된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을 처리하도록 함(안 제10조의2제3항 신설 등).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② (생략)	제10조의2(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u>1. 종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거</u>

1)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2) 이하 “실증특례”라 한다.

현행	개정안
③ <u>심의위원회의</u>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것과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u>심의위원회 상정 전 안건의 적격성 판단</u> 3. <u>심의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의 검토·조정·처리</u> 4. 그 밖에 <u>심의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 ④ <u>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u>----- -----.

다. ICT 규제샌드박스 개요

- ICT 규제샌드박스는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³⁾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37조·제38조의2에 근거하여,
법령의 미비·불완전 등으로 ICT 신기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거나 그러한 조치가 확보된 것을 전제로 실증 또는 시장 출시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주는 제도를 말함.⁴⁾
- 규제샌드박스는 크게 신속처리, 임시허가, 실증특례로 구분할 수 있음.

- 1) 신속처리⁵⁾는 규제의 존재 여부 및 내용 문의에 대해 30일 이내 회신이 없을 시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고,
- 2) 임시허가⁶⁾는 법령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할 경우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조기 출시가 가능토록 하는 제도이며,

3) 2018년 10월 16일 개정

4) 국회입법조사처,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의 현황과 향후 과제」, 2019.3.28.

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신속처리) 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등록·인가·검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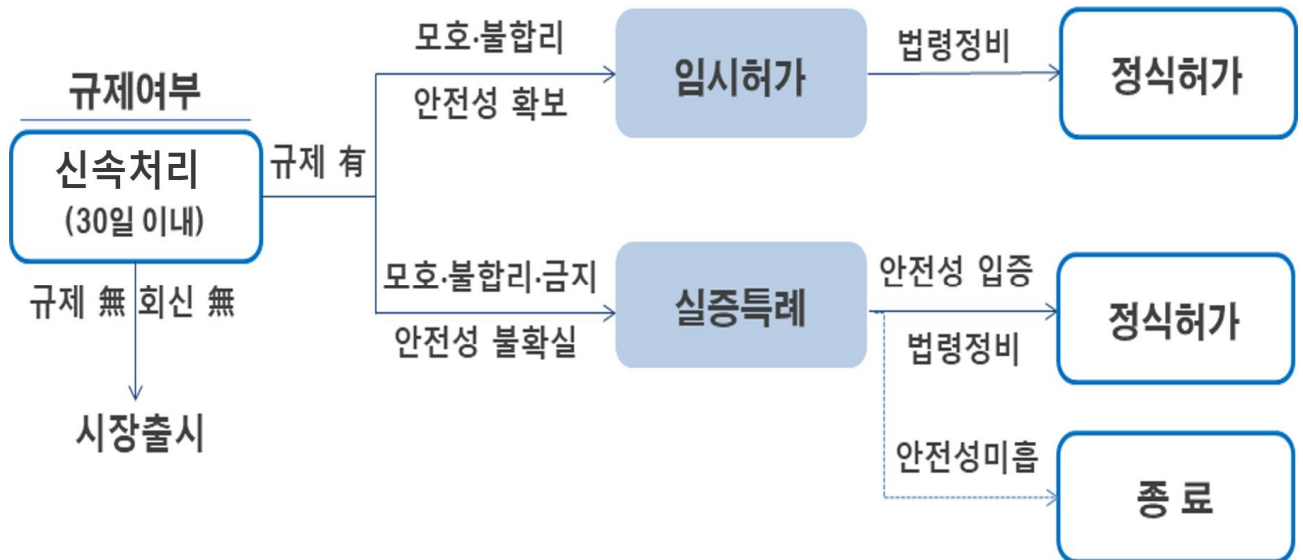
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임시허가) 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 등 사업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로 허가등(이하 “임시허가”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 3) 실증특례⁷⁾는 법령이 모호하거나 불합리 또는 금지하고 있을 경우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실증 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임.

<규제 샌드박스 특례 제도 운영 절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1.

- 임시허가와 실증특례의 경우 심의위원회⁸⁾의 심의·의결을 통해 허가 또는 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하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됨.

7)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기술·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을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1.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8)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2(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와 제38조의2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20명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3. (생략)

-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검토사항

- 현행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 사항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분야별 사전검토위원회⁹⁾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현행 사전검토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고 명칭을 전문 위원회로 변경하여 법률에 상향한 것이라 볼 수 있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첫째, 개정안으로 인하여 하나의 법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전문 위원회가 생기게 되는 문제가 있음.
 - 현행법 제7조에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략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 및 법률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9)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2(신기술·서비스심의 위원회의 구성 등) ①~④ (생략)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 사항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분야별 사전검토위원회(이하 “사전검토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설치 등)

- 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④ (생략)
- 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관련 법·제도 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 ⑥ 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 및 법률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이와 개정안으로 신설되는 전문위원회의 모체가 되는 상위 위원회(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정보통신 전략위원회)가 다르나, ‘전문위원회’라는 명칭이 동일하여 행정적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전문위원회’라는 명칭을 고유명사¹⁰⁾가 아닌 보통명사¹¹⁾라고 보더라도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또는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라고 지칭하는 과정에서 불편과 혼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두 개의 전문위원회 중 하나의 전문위원회 명칭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어 보임.

10) 고유명사: 낱말의 특정한 사물이나 사람을 다른 것들과 구별하여 부르기 위하여 고유의 기호를 붙인 이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11) 보통명사: 일반 개념을 표시하는 명사. 여러 가지 사물의 공통된 특성을 나타낸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 전문위원회는 서로 구성·역할 등이 상의한 별도의 위원회이나, 명칭의 유사성 등에서 파생될 수 있는 실무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명칭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 둘째, 개정안 제37조제4항제2호¹²⁾ 및 제38조의2제7항제2호¹³⁾에서는 동일·유사 과제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제 10조의2제3항제1호에서도 전문위원회의 업무에 동일·유사 과제에 대한 심의뿐만 아니라 의결도 아울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건
제10조의2(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② (생략) <u><신 설></u>	제10조의2(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u>1. 종전에 심의위원회의</u>	제10조의2(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 <u>(개정안과 같음)</u> <u>1. 종전에 심의위원회</u>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u>심의·의결을 거쳐</u> <u>임시허가를 받거나</u> <u>제38조의2제3항에 따</u> <u>라 실증을 위한 규제</u> <u>특례로 지정된 것과</u> <u>내용·방식·형태 등</u> <u>이 실질적으로 동일</u> <u>하거나 유사한 정보</u> <u>통신융합등 기술·서</u> <u>비스에 대한 임시허</u> <u>가 및 실증을 위한</u> <u>규제특례에 관한 사</u> <u>항의 심의</u> 2.~ 4. (생략)	<u>의 심의·의결을 거</u> <u>쳐 임시허가를 받거</u> <u>나 제38조의2제3항에</u> <u>따라 실증을 위한 규</u> <u>제특례로 지정된 것</u> <u>과 내용·방식·형태</u> <u>등이 실질적으로 동</u> <u>일하거나 유사한 정</u> <u>보통신융합등 기술·</u> <u>서비스에 대한 임시</u> <u>허가 및 실증을 위한</u> <u>규제특례에 관한 사</u> <u>항의 심의·의결</u> 2.~ 4. (생략)

12) 개정안 제37조(임시허가)제4항제2호: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상정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전문위원회에 상정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

13) 개정안 제38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제7항제2호: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상정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전문위원회에 상정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

2.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 신청에 대한 신속처리절차 마련

가. 개정안 요지

-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의 신청 내용이 종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거나 실증특례로 지정된 것과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거나 검토를 거쳐야 하는 기간을 15일 이내로 정하고, 그 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의결은 전문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안 제37조제4항 및 제38조의2제7항 신설 등)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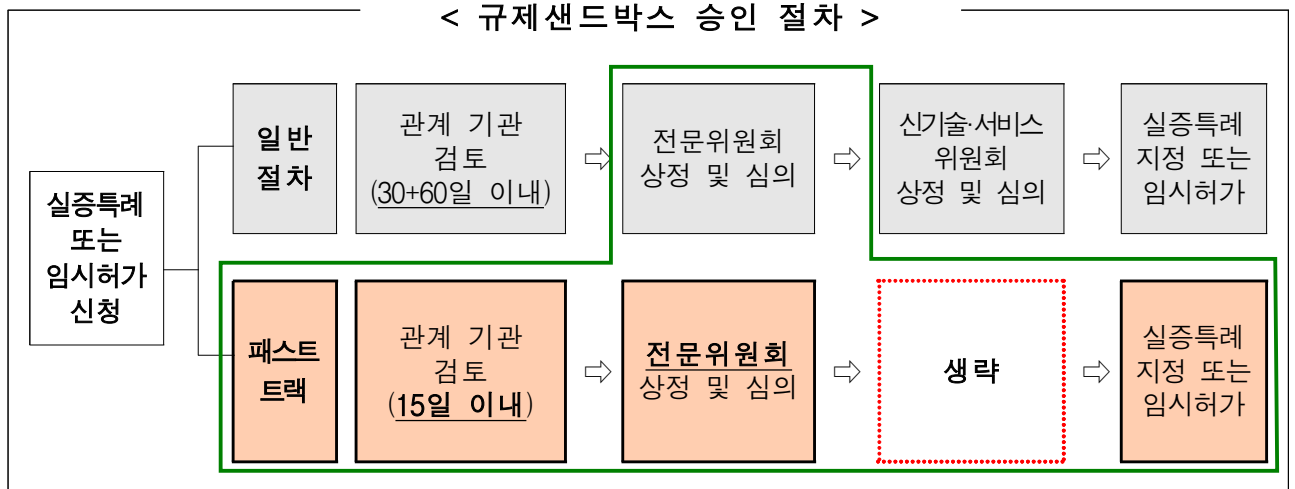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제37조(임시허가) ① ~ ③ (생략) <u><신설></u>	제37조(임시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거나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3</u>

현행	개정안
(중략) 제38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 ⑥ (생략) <u><신설></u>	<u>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u> 1. 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 15일 이내에 완료 2.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상정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전문위원회에 상정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 (중략) 제38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u>1.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결과 회신기간: 15일 이내로 단축</u> <u>2.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상정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전문위원회에 상정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u>
(이하 생략)	(이하 생략)

다. 검토사항

- 개정안은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의 신청 내용이 종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거나 실증특례로 지정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안 제37조제4항 및 제38조의2제7항에서 간소화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 1)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검토 기간을 15일로 함.
 - 2) 동일·유사 과제에 대한 심의·의결을 전문위원회에서 함.
- 위 사항을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규제샌드박스 승인 절차는 다음 도식과 같음.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2023.7.) 자료를 재구성

※ 초록색 부분이 개정안으로 인해 변동되는 절차임.

-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사업화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규정에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봄.
- 다만,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의 법 문언이 다소 모호하여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국세기본법」¹⁴⁾ 등의 입법례와 같이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14)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위임입법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 한편, 이번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마련을 주도한 법제처는 여러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령에 대한 국민의 가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관련 개정안 조문 구조의 통일성을 최대한 확보하였다는 입장임.

* 법제처는 국무조정실의 '23년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관련 5개 법령 일괄개정 절차를 추진함.

<규제샌드박스 개정 추진 법률>

연번	대상 법률	개정 내용	소관부처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유사·동일과제 신속처리절차 마련 - 면책 규정 신설 - 포상 규정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유사·동일과제 신속처리절차 마련 - 면책 규정 신설 - 포상 규정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산업융합 촉진법」	- 유사·동일과제 신속처리절차 마련 - 면책 규정 신설 - 포상 규정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유사·동일과제 신속처리절차 마련 - 면책 규정 신설 - 포상 규정 신설	국토교통부
5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포상 규정 신설	금융위원회

3.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규정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신속처리,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의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0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및 제38조의5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u>아니한다.</u>

다. 검토사항

- 현행 「행정기본법」 제4조에서는 적극행정의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동법의 위임에 근거하여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1항에서는 “적극행정”을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제16조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따른 면책을 규정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4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①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 및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의 적극적 추진 및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구체적인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6조(징계요구 등 면책)	① <u>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u> ②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공무원이 제13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감사원에 같은 법 제34조의3에 따른 면책을 건의할 수 있다.

- 개정안은 법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및 제38조의5에 따른 업무¹⁵⁾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감사원법」 제34조의3¹⁶⁾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¹⁷⁾에 따라 면책 특례를 신설하고자 함.

- 현행 대통령령인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극행정 면책규정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으로써 규제샌드박스 담당 공무원 등이 좀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임.
- 다만, 개정안의 문장에서 ‘그의 행위’에 대응되는 주어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유사 입법례¹⁸⁾를 참조하여 주어를 명기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5) 제36조(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신속처리)

제36조의2(일괄처리)

제37조(임시허가)

제38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38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감독)

제38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16) 「**감사원법**」 제34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17)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18) [유사 입법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①, ② (생략)

③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0조(**면책**)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와 관련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금융감독원 및 지정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아 혁신금융사업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기관, 단체에 특혜를 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포상 규정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3 신설 등)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40조의3(포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 검토사항

- 포상금은 위법행위를 신고한 자, 행정목적의 달성에 기여한 자 또는 어떤 일에 성과를 창출한 자에게 그에 따른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¹⁹⁾

19) 『법제이론과 실제』 603·605쪽, 국회 법제실, 2019

- 개정안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장려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해 보임.
-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운영 중인 5개의 규제샌드박스 한 개당 연평균 40만원~200만원 정도의 포상금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고, 이는 연평균 10억원 미만일 것으로 판단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제출하였음.

<예상 연평균 포상금 규모>

구분	예상 연평균 포상금 규모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포상금액(100만원) × 연2명 = 200만원
ICT 규제샌드박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포상금액(100만원) × 연2명 = 200만원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산업통상자원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포상금액(20만원) × 연2명 = 40만원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100만원 × 연2명 = 200만원
금융혁신 규제샌드박스	100만원 × 연2명 = 200만원

5. 부칙

가. 개정안 요지

-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절차 간소화에 관한 적용례를 별도로 두고 있음.

나. 개정안 조문

개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절차 간소화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4항 및 제38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u>이 법 시행 당시</u> 제37조제1항 또는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 검토사항

- 절차 간소화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37조제4항(임시허가의 절차 간소화) 및 제38조의2제7항(실증특례의 절차 간소화)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의 규정에 따라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이 법 시행 당시”라는 표현은 적용 시점이 불명확하여 유사입법례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라고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유사 입법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2094호, 2013.8.13.> 제2조(정보공개서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제2조제10호 및 제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본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변경등록 시 제2조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되는 사항을 수록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5026호, 2017.10.31> 제3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u>개정규정</u> <u>시행 전에</u>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문 의 처

02)6788-5228